

2020-10호

10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의정**

도민이 더행복한 **행복의정**

의정정보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최근 제·개정 법령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2020-10호

10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07 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 10 광주광역시 항일독립운동유적 발굴 및 보존 조례
- 12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14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17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23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25 여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29 충청남도 저출산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정토론회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 39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일본어잔재 청산 나선다
- 44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 46 경상남도의회, '카카오톡 이모티콘 16종' 선착순 배포

최근 제 · 개정 법령

- 51 한부모가정지원법
- 53 학교체육진흥법
- 5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57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질의
- 60 경기도 고양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질의
- 64 강원도 고성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관련질의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10호

01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광주광역시 향일독립운동유적 발굴 및 보존 조례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1. 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시행 2020. 10. 7.] [인천광역시조례 제6470호, 2020. 10. 7.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학진흥과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의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시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학관등록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문학관 등록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진흥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대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조직) 공립문학관에는 관장 및 전문인력을 둔다.

제12조(개관 및 휴관) 공립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람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음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13조(관람료)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4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인천광역시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기관, 학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광주광역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조례

[시행 2020. 9. 28.] [광주광역시조례 제5544호, 2020. 9. 28.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유적을 발굴,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후손들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민족차별 등에 항거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유적”이란 항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장소 또는 각종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항일유적 발굴 및 조사”는 항일유적과 관련된 지역과 유적지에 대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유적 발굴·보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항일유적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부처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학술적, 역사적으로 증명된 항일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항일유적에 대해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구의 협조요청) 시장은 항일유적 발굴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조사·연구 계획
2. 항일유적의 보존 및 안내판 등 설치 계획
3. 항일유적 선정 기준 등
4. 항일유적조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5. 그 밖에 항일유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항일유적 보호 활동의 지원 등) 시장은 항일유적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치구 또는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시장은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관련 국내·국외 항일유적 실태조사
2. 항일유적 발굴에 따른 안내판 등 설치
3. 항일유적의 교육·홍보
4. 국외연계를 통한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5. 그 밖에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리의 원칙) ① 항일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으로써 해당 유적을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유자·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자치구에 관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항일유적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유적에 대하여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항일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유적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 2020. 10. 28.] [대전광역시조례 제5528호, 2020. 10. 14. 제정]

📌 주요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4.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추진기관)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설립한 공사·공단 및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의 실시를 권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지방경찰청, 피해자 지원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4.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시행 2020. 10. 8.] [경기도조례 제6745호, 2020. 10. 8.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 설치)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실·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3.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4.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5.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6. 플랫폼 노동자의 조직화 지원
7.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 외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내 시·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종합계획 등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기도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4.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관련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현황
2. 플랫폼 노동의 법체계와 문제점
3.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발굴에 관한 사항

제9조(모범거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법률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률상담을 받은 플랫폼 노동자 대하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무료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시행 2020. 10. 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641호, 2020. 10. 14. 일부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
2.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른 기부금
3.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시설의 전력판매 수익금
4. 제주에너지공사의 이익배당금
5. 제2호 이외의 기부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 지원 사업
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제5조제5호에 따라 기부자가 지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유자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사무관

제9조(지급정지 및 회수)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업무 담당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인 발전 사업자
5.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생에너지 업무 소관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10호

02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여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1.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0. 19.]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1716호, 2020. 10. 19.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공공기관 연계
3.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여수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시행 2020. 10. 12.] [여수시 조례 제1547호, 2020. 10. 12.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관할의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자동차,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협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 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여수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및 선박·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및 선박·장비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여수시 관할의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여수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여수시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수난구호 활동에 사용된 활동비와 유류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비로 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여수해양경찰서장 또는 여수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중복 또는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10호

03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 저출산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정토론회

충청남도 저출산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정토론회

〈20. 10. 20.(화), 14:00~16:00 / 천안시 위드커뮤니티 센터〉



I 총 평

(한영신 의원)

- 본 토론회는 도민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준비된 의정토론회로,
- 실질적 저출산 정책의 대상자인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도민, 결혼적령기의 도민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재의 정책의 문제점과 활용도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였고,
- 이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충청남도의 저출산 극복정책 추진계획 설명 및 전문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금전적 중심 해결방안이 아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우선 조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교육 및 정책 홍보, 여성 중심 육아를 지양하며 성 평등한 같이 돌봄 체계 구축 등이 향후 과제로 도출되었음.

⇒ 토론회의 주요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상황을 지속적 관리하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① 김의영 (백석대학교 교수)

-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사회현상으로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으나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다가 2000년대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
-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와 가족의 형태 및 기능변화, 노동 시장 고용 불안정의 심화로 인하여 저출산 문제는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 문제.
-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만혼화 또는 결혼에 의미를 두지 않는 비혼화의 문제와 결혼을 하고도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가구, 맞벌이로 인하여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어려워져 추가 출산을 중단하는 가구 등의 현상으로 나타남.
- 개인적, 사회 경제적 측면과 다양한 집단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 등 여러문제들이 중첩돼 저출산으로 인하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인 구성원의 감소와 경제 인구가 소실되고 복지 지출이 확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노동력이 부족해

지는 현상은 세대간의 불화와 사회적 연대를 해체하는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출산 장려금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적게는 몇 십만원부터,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지급해주고 있으며, 셋째를 가졌을 때부터 지원금과 혜택이 급증함, 이러한 정책을 첫째아이부터 전폭적인 지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출산휴가 정책은 출산 일 전후로 90일간 받는 유급휴가를 산전 후 180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육아휴직을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젊은 세대가 좀 더 결혼과 출산에 대해 거부감이 없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나 참여프로그램을 구상 및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젊은 세대의 개인적, 사회적 의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녀의 필요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 교육정책이 요구됨. 또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의 노인고용인력을 늘림으로써, 보육의 질 향상과 고령화 문제에 동시에 접근하여 해결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저출산 혜택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직접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혜택을 받는 도민의 시각에서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음.

2 지정토론(5인)

① 이태규 (충청남도청 출산보육정책과장)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구현을 위해 도는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중임.
- 결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행복한 주택(1000호), 지역 선도대학 육성 지원들 저기 및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결혼사관학교, 젊은 층 어울림 행사 등 결혼지원을 추진함.

-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 산후 조리원 건립, 임신부119구급 서비스 등 안심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출산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자녀 맘 건강지원, 임신부 우대금리를 시행하며 청소년 산모 출산비용 지원, 다문화 임신부 동역서비스등 다양한 가정의 포용성을 제고함.
- 양육 천화여건 및 맞춤형 돌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이키움뜰(24시간 보육), 영유아교통안전 식품 지원 등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28개소), 행복키움수당 확대(36개월)을 통해 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워라벨 실천기업(27개)을 지원하며 출산·다자녀직원의 후생복지를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 대응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대사 위촉 및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며 저출산 극복 평생교육강좌 개설 및 인구교육 등으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 할 것.

② 김영옥 (천안시청 여성정책과장)

-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출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저출생의 문제는 단순히 출생률이 아니라 결국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가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 따라 돌봄의 열화와 책임을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책임과 역할로 재분배할 필요성이 있음.
- 아동돌봄은 주로 통념상의 가족 규범에 기반하여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가족단위의 자녀돌봄에 제한되어 온 경향이 있음, 그러나 1인가구, 한부모 가구, 조손자녀 가구 등 가족형태가 빠르게 변화하여 다양한 가족형태의 관계에서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돌봄지원정책이나 새로운 시대적 돌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돌봄 참여에 대한 남성들이 요구와 기대도 늘어나고 있는 사회에 따라 남성들의 돌봄 역할의 책임성과 권리가 동시에 보장되는 쪽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해 남성들이 돌봄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책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음.

③ 노승화 (건양대학교 평생교육대학 교수)

- 젊은 부부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출산에 대한 가장 걸림돌은 경제활동을 위해 생업과 출산을 병행해야 하는 점임. 이를 위해 경제활동과 병행하여 출산 및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줘야 함.
-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청년 실업률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OECD 회원 국가 중 평균 4.4%가 감소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0.9%가 증가됨. 또한 자살률도 회원국중 한국이 1등이며 17개 시도중에서는 충남이 1등임. 이는 분명 출산율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있음. 따라 아이 낳기 좋은 환경과 동시에 전체적인 경제활동 여건 및 살기 좋은 충청남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전국 스포츠 클럽이 약 110개정도가 운영중임. 앞으로 문체부의 정책에 따르면 약 200개 이상의 클럽이 설립 계획중이며 이를 활용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스포츠 시설의 보육의 기능, 인성 교육등을 연계하면 좋은 정책을 발굴 할 수 있다 판단됨.

④ 고성희 (남산초등학교 운영위원)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 됨, 그런 접근보단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 정책 발굴을 출발하기를 바람.

- 출산을 장려하는 교육 및 홍보에서 다자녀 가정의 긍정적 효과를 알릴 필요가 있다 생각됨, 국가적 사회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았을 때의 성취감이라던가 아이를 키우면서 얻는 행복감은 도민들에게 좀 더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임.
- 산후도우미 혜택을 첫째와 둘째를 키울 때는 만족하며 이용하였지만 셋째를 출산한 이후로는 이용할 수 없었음. 그 이유는 집에 산모를 제외한 어느 가족이라도 상주 할 경우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했고 결국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졌음. 산후 도우미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여러명의 자녀를 낳는 산모도 사용할수 있도록 정책적 반영이 되어야 한다 생각함.
- 사실 도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저출산과 관련한 대책에 대한 이미지는 “자,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아이를 출산 하세요” 임. 그러나 이미 다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출산과 관련 된 정책을 향한 기대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돕기 위해 이런 정책을 마련했으니 힘내세요.” 의 이미지를 갖는 것임. 정책의 연구와 시행이 단지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는데 있기 보다는,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 초점이 있으면 어떨까 함. 오히려 출산보다는 양육에 주된 초점을 가지고 시행되는 정책들이 저출산의 문제와 양육 문제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⑤ 김소당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 위원장)

- 미혼 남녀가 서로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자식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답게 삶을 영위하는 삶의 가치일 것임.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는 많은 장벽이 존재함.
- 더욱 놀라운 것은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의 발표임. 인류 최초로 사라지게 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음. 이는 2016년 당시 1.17명의 출산율의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120년 후 인구가 1천만으로 줄었다가 27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단 한명도 남지 않을 것 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에 대한 문제를 극명하게 경고한 것임. 상황이 이런데도 대한민국은 아직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않은 것 같음.

- 정부가 해마다 저출산 대책에 수십조원원씩을 쏟아 붓고 있지만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년대비 0.92명으로 7.4%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음. 최근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음. 이는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진 결과인 것임. 그야말로 인구절벽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개인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임. 60~70년대 국가가 나서서 무리하게 추진한 산아제한 정책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위기의 결과를 초래한 것임. 국가정책이 100년 대계의 정책이 아니라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을 것임.

3 마무리 발언

- 2020년도에는 생각지 않았던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에 커다란 혼란과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음. 이와 마찬가지로 인구증감 조사 첫해인 1983년 이후 최초의 연간 자연 인구감소가 예상됨. 이는 가볍게 받아들여선 안 될 문제이며, 젊은 세대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회원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 따라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좋은 의견을 토대로 논의된 내용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마무리발언 : 한영신/ 충청남도의회 의원

III 토론회 결과

- 올해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월부터 7월까지 누적사망자는 17만 6,363명인 반면 출생아는 16만 5,730명으로 7개월간 1만 633명이 자연감소, 즉 월평균 1519명이 자연감소 함. 인구증감 조사 첫해인 1983년, 인구증가 51만 4592명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인구 자연증가의 폭은 꾸준히 감소해 왔지만 자연감소는 단 한번도 없었음. 하지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인구 자연감소를 보았을 때 올해는 사상 첫 연간 인구 자연감소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됨.
- 저출산에 대한 방안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과제로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혼신의 노력을 요함.
- 출산과 아이 돌봄은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남성과 더 나아가 모든 세대를 아울러 고민하고 해결해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사회에 맞는 아이돌봄 인식 및 여성에게만 양육의 책임 전가하는 인식부터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금전적 해결 방안이 아닌 실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토론회, 설문조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 청취를 요함.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구현 정책과 동시에 저출산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또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교육 행사와 홍보가 필요함.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15개 시 · 군
 -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10호

04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일본어잔재 청산 나선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경상남도의회, '카카오톡 이모티콘 16종' 선착순 배포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일본어잔재 청산 나선다

- 진정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은 무의식중에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 잔재’ 청산부터 시작해야 -

574돌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이하 반민특위, 위원장 홍성룡)는 “진정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은 무의식중에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 잔재’ 청산부터 시작해야 한다” 고 밝혔다.

홍성룡 위원장은 “일본어 잔재는 한·일간의 자연스러운 언어 접촉 과정에서 우리말에 유입된 것이 아니라 일제에 의한 이른바 민족말살 정책에 의해 강제로 유입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일본어 잔재가 우리 삶과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일본어 잔재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순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음차어’ 를 꼽았다. 홍 위원장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순 일본어로는 짬뽕, 우동, 가라, 기스, 사라 등이 있다. 이는 초마면, 가락국수, 가짜, 흙, 접시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 일본식 한자어로는 망년회, 익일, 가불 등이 있는데 이는 송년회, 다음 날, 선지급으로, 일본어 음차어인 모찌, 유도리, 만땅 등은 찹쌀떡, 융통성, 가득(차다/채우다)로 각각 사용해야 한다” 고 말했다.

특히, “건설 분야나 당구 등과 같은 특정 전문 분야에서 노가다(→(공사판)노동자), 함바(→현장식장), 와쿠(→틀), 겐세이(→견제), 시네루(→회전), 다이(→당구대) 등 충분히 사용가능한 우리말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투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인사동, 송도, 육천, 원남동, 관수동 등과 같은 지명도 일제가 우리의 열과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 일본식으로 바꾸거나 자기들 멋대로 이름을 붙인 것” 이라면서, “지명 변경에 따른 혼선과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핑계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이러한 일본식 지명들도 홍보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반드시 우리 고유 이름으로 되찾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홍 위원장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에도 몽리자(→수혜자), 사력(→자갈), 계리(→회계처리), 관창(→노즐) 등과 같은 일본어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며, “일본어 투 용어는 대개 이해하기 어려워 일반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반드시 순화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우리는 광복 직후부터 꾸준히 국어 순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상당수 일본어 잔재를 정리했지만 여전히 비공식적인 자리나 특정 분야에서 일본어 투 용어가 버젓이 쓰이고 있는 이유는 정부나 자치단체, 국민들이 유난히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등과 같은 기념일의 10년 단위가 되는 해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매번 정부와 자치단체의 의지부족과 국민들의 무관심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적어도 행정용어에서 만큼은 일본어 잔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서울시의회 반민특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반민특위는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어 잔재, 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 일제 잔재를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지난달 15일 출범했다.

<첨부1 :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 >

구분	일본어 투 용어	우리말 표현	일본어 투 용어	우리말 표현
일본어	가라	가짜	가오	체면
	가타	불량배	구사리	편잔
	기스	흠	나가리	유찰
	나라시	고루 펴기	나리비	줄 서기
	노가다	(공사판) 노동자	모치	참쌀떡
	빠끼	(손님) 끝기	사라	접시
	소데나시	민소매	시다바리	보조원
	아타라시	새것	야미	뒤틀거래
	에리	깃	엔꼬	바닥(남)
	와쿠	틀	우와기	윗도리
	유도리	용통	이지메	(집단) 괴롭힘
	지라시	선전지	헤라	(구둣)주걱
	호로	덮개	후카시	폼제기
일본식 한자어	망년회	송년회	거래선	거래처
	전습	수습	종지부	마침표
	모포	담요	대절	전세
	고수부지	둔치	도합	합계
	구좌	계좌	보합세	주춤세
	노견	갓길	불입	납입
	가불	선지급	고참	선임
	가처분	임시 처분	다반사	예삿일
	마대	포대/자루	수취인	받는 이
	익일	다음 날	잔고	잔액
	가봉	시침질	견양	본보기
	견출지	찾음표	구보	달리기
	급사	사환	기라성	빛나는 별
	노견	갓길	대금	값
	대절	전세	보합세	주춤세
	소사	사환	수순	차례
	수입고	수입량	수출고	수출량
	심팔번	단골 노래	양생	굳히기
	제전	잔치	하구언	강어귀 둑
	지참	지니고 음	취조	문초

구분	일본어 투 용어	우리말 표현	일본어 투 용어	우리말 표현
일본어 음차어	모찌	참쌀떡	쓰키다시	결들이찬
	유도리	음통성	아나고	붕장어
	나가리	무산	가라	가짜
	나와바리	구역	간지나다	멋지다
	단도리	단속/채비	무데뽀	막무가내
	땡땡이	물방울	이빠이	많이/가득
	만땅	가득 (차다/채우다)	곤조	고집/근성
	쇼부	결판	기스	흠/흠집
	와사비	고추냉이	분빠이하다	나누다/각자내기하다
	찌라시	전단지/광고지	사시미	생선회
	가오	체면/무게	와꾸	틀
	쿠사리	편찬	지리	맑은탕
	노가다	막노동/막일	뽀록나다	들통나다
	대뽕	대장	비까번쩍하다	번쩍번쩍하다
	나시	민소매	뽕사리	실수/음이탈/헛발질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 22일 141명 도의원 전원 대규모 결의대회 실시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장현국)가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 후 첫 공식 활동인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22일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직후 경기도의회 1층 현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 낭독 및 피켓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총괄추진단장을 맡은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의 사회로 진행된 결의대회에는 위원장인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을 비롯해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 등 141명의 도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건의문 낭독에 앞서 진용복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회의원들의 저조한 관심 탓에 결론을 맺지 못한 채로 심의 종료됐다”며 “전국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결의대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권정선 의원(더민주, 부천5)과 김강식 의원(더민주, 수원10)이 건

의문을 대표로 낭독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이 지방의원 염원이라고 밝히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국회에서 앞장서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의문에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의결 ▲자치분권에 필요한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 및 관련 법안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의원들은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장현국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장으로 위원회 중심으로 동료 의원들과 활동을 지속하며 법안의 국회통과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장현국 의장은 “자치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중앙 정치권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치분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하지 못한 채로는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장현국 위원장과 진용복 총괄추진단장 등 총 23명의 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카카오톡 이모티콘 16종’ 선착순 배포

- 친근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노력 -

경상남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의정활동 ‘이모티콘’을 오는 16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로 배포한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기쁨, 행복, 감사 등의 감정과 의정활동을 표현하는 남녀 의원 캐릭터 16종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친근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기획됐다.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경상남도의회’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2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다운로드 시점부터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김하용 의장은 “비대면 시대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바일 이모티콘을 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변화와 혁신으로 도민에게 희망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의회는 지난해 1월부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와 달라지는 제도 등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과 유익한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 남·여 의원 캐릭터 이모티콘 16종 >



© 2020,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10호

05



최근 제 · 개정 법령

한부모가정지원법

학교체육진흥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일부개정]

개정이유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제3항).
- 나.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의5 및 제5조의6 신설).
- 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 신설).
- 라.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3항제2호 신설).

-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변경 신고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제20조제4항 신설).
- 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 일시적 운영중단 또는 운영재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제21조제1항 및 제3항).

2. 학교체육진흥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498호, 2020. 10. 20.,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잦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인 학교체육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함(제6조제3항 신설).
- 나.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음(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하여야 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제12조의3 신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33호, 2020. 10.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인센티브 제공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조항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의4(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로부터 보고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확인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10호

06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질의

경기도 고양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질의

강원도 고성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관련질의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기존 축사의 이전에 따른 신축 허용과 관련하여, 기존 축산농가가 이전하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세대주 총수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축사의 이전에 따른 신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의견20-0198, 2020. 9. 29., 세종특별자치시]

【질의요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기존 축사의 이전에 따른 신축 허용과 관련하여, 기존 축산농가가 이전하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세대주 총수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축사의 이전에 따른 신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할 것입니다.(각주: 헌법재판소 1995. 4. 20.자 92헌마 264, 279(병합) 결정 등 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배출시설을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함)을 말함)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본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함)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해야한다고 규정(제5항 본문)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해제 및 해당 구역에서의 제한에 관한 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수질 보전을 위해 관할구역의 자연환경 또는 가축사육 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세부지역을 지정하고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여 그 제한내용을 재량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위임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내용 또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기존 축사에 대한 신축 등을 허용할지 여부와 허용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허용범위와 그 요건을 조례로 정하는 것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0. 8. 23. 회신 10-0200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9. 20. 의견제시 16-0236, 법제처 2015. 7. 24. 의견제시 15-0139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하 “세종시조례안”이라 함)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기존 축산농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축사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①이전할 축사와 기존 축사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상일 것, ②이전할 축사가 해당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마을경계로부터 바깥쪽으로 2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외에 ③이전하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세대주 총수의 70퍼센

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가축사육제한구역과 일부 중첩되는 다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의 이전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가축사육제한구역과 일부 겹치는 인근의 다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한정하여 기존 축사의 이전에 따른 신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축사가 새로 이전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그 구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일정 비율 이상 받도록 하는 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시조례안의 내용은 주민 생활환경의 보호라는 행정목적과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기존 축산농가의 재산권 등의 보호 간에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기존 축사에 대한 신축을 허용할 수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와 구체적인 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 축사의 이전 신축에 필요한 지역 주민의 동의 요건을 설정하면서 구체적인 동의 비율을 정하는 것도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대상 사건 중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 무죄가 입증된 사건의 불법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한 사람 등이 공공기관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시장이 참여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의견20-0211, 2020. 9. 29., 경기도 고양시]

【질의요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대상 사건 중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 무죄가 입증된 사건의 불법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한 사람 등이 공공기관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시장이 참여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대상 사건 중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 무죄가 입증된 사건의 불법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한 사람 등이 공공기관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시장이 참여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본문),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말하고,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단서).

「고양시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고양시조례안”이라 함) 제2조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

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함) 제2조제1항의 사건 (이하 “진실규명대상사건”이라 함) 등 중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 재심 청구가 인용되어 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무죄가 입증된 사건을 “과거사 재심무죄사건”으로 정의하고(제1호), 과거사 재심무죄사건의 원인이 되는 원심과 관련하여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한 사람 등을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로 정의하면서(제2호), 같은 조 제4조에서는 시장은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가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으로서 임의적·비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 내지 동의를 얻어내어 행정상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행정지도나 행정행위 수범자의 협력을 통하여 행정목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나(각주: 법제처 2018. 10. 10. 의견제시 18-0171, 법제처 2012. 5. 24. 의견제시 12-0155 참조) 이러한 권고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고양시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권고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취업 활동 제한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 등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8. 28. 의견제시 14-0167 참조).

그런데 과거사정리법에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조사대상 선정, 조사진행,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제3조),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되 위원회 활동이 종료될 경우 작성·보고하는 종합보고서에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2조),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제35조)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의 취업 제한 등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에서는 제10조에서 출자·출연기관(각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임원(각주: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그 밖에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말함(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제1항 참조))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미성년자(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2호),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의무와 책임 미이행 등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4호)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는 직원 채용에 대해 규정하면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제1항)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서는 지방공사의 임원(각주: 시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말함(「지방공기업법」제58조제1항 참조))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미성년자(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3호),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4호),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5호)으로 명시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을 지방공단의 경우에도 준용(제76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사정리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지방공기업법」에서는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가 해당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달리 조례로 해당 기관 임직원의 임용 등에 대해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 고양시조례안에서는 해당 조례안에 따라 취업 활동 참여 제한의 대상이 되는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를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한 사람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만 가지고는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고양시조례

안의 집행을 위해서는 결국 고양시장이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의 범위 및 기준을 결정하여 이들을 특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침익적 성격을 갖는 규정의 경우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각주: 법제처 발간 법령입안·심사기준 36쪽 참조)과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조사·진실규명 등에 대한 사항이 국가사무라는 점(각주: 법제처 2018. 8. 22. 의견제시 18-0150, 법제처 2013. 12. 30. 의견제시 13-0396 참조)을 고려할 때 특정되지 않는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를 대상으로 고양시장이 취업 활동 참여 제한을 권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비록 해당 고양시조례안의 내용이 권고의 형식이어서 권고 대상 행위 여부를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양시장이 인사감사권을 갖고 있는(각주: 지방출자출연법 제15조의 3,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3 및 제63조의8 등 참조)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으로서는 고양시장이 행하는 취업 활동 제한 권고가 권고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사실상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권고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법률의 위임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2. 5. 24. 의견제시 12-0155 참조).

따라서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가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고양시장이 참여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정하면서 각 호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 관련)

[의견20-0191, 2020. 9. 24., 강원도 고성군]

【질의요지】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정하면서 각 호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정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각주: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추94 판

결 참조)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2002추16 판결 등 참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이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제1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에서 독립적·병렬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임의로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게 되면 후순위 호에 해당하더라도 선순위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정하면서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면서 일부 사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각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제18호 및 제23호 등)하고 있는 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필요한 내용 위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이하 “제8호”라고 한다)에서는 수익계약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물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물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춰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이지, 조례로 이와 무관한 조건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거나 같은 법 시행령의 제13조제3항의 다른 사유와 연계해서 규정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물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시행령의 위임 취지를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8호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제7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8호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정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특정 단체 등과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7호와 별도로 수익계약이 가능한 사유를 정하면서도 사실상 제7호에 따라 수익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의 수익계약 대상을 예비적으로 정하는 결과가 되게 되어 적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표지 설명

충남도의회 11대 후반기 운영 혁신방안 모색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2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후반기 의회 운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명선 의장과 전익현·조길연 1·2부 의장, 홍기후 운영위원장, 의회사무처장, 각 부서 담당관, 수석전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의회 운영 추진상황에 대한 각 부서별 보고, 종합 토론과 개선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11대 후반기 의회 비전인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목표로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 의정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 의정 등 의정 방향 실현을 위한 신규 정책과 중점 과제를 모색했다.

김명선 의장은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감염병 사태로 침체된 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며 “도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려면 의회 역시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반기 의회는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며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경쟁력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0. 10. 22. 보도자료-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20년 10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